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동물보호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동물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 2023.4.27. 시행(일부는 2024.4.27.)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보호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반려동물 영업 제도 정비 및 제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개정)

- 1) (제·개정 주요내용) 변경신고 사유에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추가
-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을 해외에서 기르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내 동물등록정보 현행화 제고

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5조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보호동물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민간보호시설은 운영자 성명, 시설 명칭, 주소, 시설 면적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 2) (제·개정 사유) 그동안 법적 정의가 부재하여 애니멀호더, 반려동물 영업자와 구분이 어려웠던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동물학대, 변칙적 영업, 열악한 시설 양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관리체계 확립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전임수의사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곳 등은 보유한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전임수의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2) (제·개정 사유)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 및 사육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임수의사 제도를 신설하여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동물실험 방지 및 실험동물의 건강·복지 증진

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4조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관한 금액산정기준, 가중·감경사유,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2) (제·개정 사유) 영업정지처분이 영업자 보유 동물 또는 영업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례 등 방지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26조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규 의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CCTV 설치 장소 및 관리기준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을 상시 보호·관리·취급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등 예방

바.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33조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
보호시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규정

2) (제·개정 사유) 공표 제도를 통한 동물보호법상 의무 미이행 방지
강화 및 국민 알권리 제고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봉사동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119구조견
3.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가. 국토교통부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4.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5.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 괄호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8. 「국제백신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 사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제출 시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⑦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신고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제1항

제6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⑧ 제1항제7호 및 제8호 사유로 제2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⑨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동물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5. 법 제35조제1항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
6.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책임보험의 가입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할 맹견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으로 한다.

②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할 책임보험의 종류는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 가.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 나.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2.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3. 하나의 사고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14조(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책임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의 안내
2. 책임보험 가입의무자의 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3. 책임보험 가입대상에 관한 현황자료의 제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관계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에 책임보험 가입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20마리(개 또는 고양이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시설 운영자의 성명
2. 보호시설의 명칭
3. 보호시설의 주소
4. 보호시설의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제16조(공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보호비용의 징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19조(전임수의사)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연간 1만 마리 미만이라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전임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

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
한 확인 및 평가

제21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
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
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1.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④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⑦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동물실험의 감독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요청시기 등을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동물실험의 감독에 필요한 자료 및 시설의 출입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의된 동물실험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2.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3.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및 고통의 경감조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의 감독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요청받은 바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

2.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

제23조(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①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개선을 할 수 없는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5.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6.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7.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호시설의 보호동물 관리 등에 관한 감독
8. 법 제5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9.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인력 등 허가 또는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10.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11. 법 제86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12.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지도

13.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④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설비기준 및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권장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
3. 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4.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임수의사 자격에 관한 고시 및 교육기관의 지정
5.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고시
6. 법 제5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

7. 영 제2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조사·통보
 8. 법 제86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 나.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조사 및 서류 검사 등
 - 다.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출입·검사계획의 통지
 - 라. 법 제86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9.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 해촉 및 수당 지급
 10. 법 제94조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및 정보의 공개
 11. 법 제95조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관리
 - 나.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다.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정보의 수집을 위한 자료 요청
 - 라. 법 제95조제6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12.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7호·제22호부터 제2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3항제1

호에 따른 수입내역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0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정보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소속기관의 장) 법 제9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제32조(공개대상정보 등)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집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사육 현황
2.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현황
3.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을 한 업체의 현황
4. 기타 동물보호에 관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개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④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정보시스템의 정보 관리 등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 2.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3.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 4.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물보호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영업의 종류
3. 영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 또는 영업자의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시설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에 관한 사무
5.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76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
10. 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11. 법 제8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2.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에 관한 사무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7호·제22호부터 제2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

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101조제2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7호·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3. 법 제101조제2항제4호·제5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18호부터 제2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제13조제1호사목 중 “「동물보호법」 제12조”를 “「동물보호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제10조제3항 관련)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한다.
- 다. 검역본부장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대하여 제4호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부여한다.
- 라.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2. 무선식별장치의 규격

- 가.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구성: 총 15자리(국가코드3 + 개체식별코드 12)

2) 표시

코드종류	기관코드 (5-9비트)	국가코드 (17-26비트)	개체식별코드 (27-64비트)
KS C ISO 11784	1	410	12자리

가) 기관코드(1자리): 농림축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때에는 표시에서 제외

나) 국가코드(3자리): 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다) 개체식별코드(12자리): 검역본부장이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할당한 번호체계

나. 무선식별장치의 표준규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 : 2009)와 동물개체식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KS C ISO 11785 : 2007)에

따를 것

- 2) 동물의 체내에 주입하는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에 따를 것
- 3)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할 것

3. 무선식별장치의 주입 또는 부착방법

- 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의 무선식별장치를 주입하도록 하며, 주입 위치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 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해당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4. 그 밖에 동물등록번호 체계,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할당·부여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 영역 범위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영업정지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한 영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영업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times \text{영업정지 일수} \times 0.1$

3. 제2호의 계산식 중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5.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등(제26조 관련)

1. 설치대상 및 장소

가. 법 제35조제1항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 보호실 및 격리실

나.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 보호실 및 격리실

다. 법 제69조제1항 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 1)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에 한한다) : 경매실, 준비실
- 2) 동물장묘업 : 화장(火葬)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 3) 동물위탁관리업 : 위탁관리실
- 4) 동물미용업 : 미용작업실
- 5) 동물운송업 :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

2. 관리기준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동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호	20	40	6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 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2호	20	40	60
다.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3호	20	40	60
라. 소유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4호	20	40	60

경우				
마. 소유자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4항제1호	10	20	40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4항제2호	10	20	40
사.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법 제101조 제4항제3호	20	30	50
아.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4항제4호	20	30	50
자.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4항제5호	5	10	20
차.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4항제6호	5	7	10
카. 소유자등이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과.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5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타.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6호	30	50	100
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7호	30	50	100
거.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지 않은 경우				
너.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호시설을 폐쇄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8호	50	100	200
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머.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8호	30	50	100
버.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500	
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100	300	500
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100	300	500
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4호	100	300	500
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5호	100	300	500
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6호	100	300	500
터.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9호	30	50	100
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7호	100	300	500
허. 영업자가 법 제69조제4항 단서 또	법 제101조	30	50	100

	는 제73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2호			
고.	법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3호	30	50	100
노.	영업자가 법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3호	50	100	200
도.	영업자가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4호	50	100	200
로.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5호	100	200	300
모.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6호	50	100	200
보.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5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표시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7호	50	100	200
소.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9호	100	300	500
오.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4호	30	50	100
조.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5호	30	50	100
초.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6호	30	50	100
코.	영업자가 법 제7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제101조 제2항제18호	50	100	200

토.	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영업자가 법 제7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7호	30	50	100
포.	영업자가 법 제7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8호	30	50	100
호.	영업자가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19호	30	50	100
구.	영업자가 법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20호	30	50	100
누.	영업자가 법 제8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21호	30	50	100
두.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22호	20	40	60
루.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23호	20	40	60
무.	법 제86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25호	30	50	100
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24호	20	40	60
수.	법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1조 제3항제26호	20	40	60
우.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4항제7호	10	20	4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621